

당 규

2008. 12. 13 제 11차 중앙위원회 개정



창조한국당

사람이 희망이다

당 규



목 차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
당규 제2호 당인규정	17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22
당규 제4호 사무직당직자인사 및 복무규정	48
당규 제5호 당비규정	57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62
당규 제7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규정	69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72
당규 제9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74
당규 제10호 선거대책위원회규정	82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규정	87

❖ 당규 제 1 호

당원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따라 당원의 입당, 복당, 탈당, 전직, 권리와 의무, 당우의 가입과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원·당우의 요건)

- ①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이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터넷 당 홈페이지로 가입을 완료한 자로 한다.
- ② 당우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당원서의 당우 가입란에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당 홈페이지에 당우로 가입을 완료한 자로 한다.

제3조 (당원의 구분)

- ① 일반당원 :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입당절차를 완료한 당원을 말한다.
- ② 기간당원 : 최근 3개월 이상, 매월 1만원 이상 또는 연 10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생, 장애인 등의 당비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 이상, 매월 3천원 이상 또는 연 3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당원의 의견제시)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부서에 문서 또는 인터넷에 의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당원의 권리구제)

- ① 당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제3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및 시·도당 소관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당원이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의 각급 윤리위원회에 문서로 진정할 수 있다.

- ③ 법률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진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진상조사를 하거나 권리구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입당절차)

-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거주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입당원서의 처리)

- ① 시·도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한 후 당사자에게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 ② 시·도당이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시·도당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때에 발생한다.
- ④ 중앙당에 접수된 입당원서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비치케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도당이 없거나 사고당부인 경우에는 개편된 때에 즉시 송부한다.

제8조 (특별입당)

- ① 당대표 또는 중앙위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의 입당을 시·도당과 협의하여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1. 사회의 존경을 받는 저명한 인사
 - 2. 당의 발전과 정강정책 구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 ②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해당 시·도당은 이 당규에 규정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입당한 자를 특별당원이라고 하며, 특별당원은 기간당원으로 한다.

제9조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① 대통령 및 시·도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대의원은 기간당원 이상으로 한다.
-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당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일반 당원과 국민들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참여하는 개방적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 (복당)

- ① 복당 여부는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 ② 제명된 자가 복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입당원서의 처리)에 규정한 입당원서 이외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탈당한 자는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위원회나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복당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전항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 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의거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되며, 이때 제출할 서류는 관계법조문 또는 사규와 재직·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 ⑤ 당에서 제명된 자가 복당할 때에는 해당 시·도당윤리위원회에 소명절차를 밟고, 시·도당상무위원회 복당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⑥ 복당한 자는 일반 당원 자격을 가지며,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간 당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복당 신청)

제명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탈당시의 해당 시·도당에 복당하여야 한다. 단, 주소지 변경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을 통해 변경된 주소지의 시·도당에 입당 또는 복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입당 및 복당의 결정)

- ① 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 ② 입당 및 복당의 심사는 입당·복당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 ③ 시·도당이 전항의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의 경우는 허가된 것으로, 복당의 경우는 불허된 것으로 본다.
- ④ 시·도당은 입당과 복당이 확정된 후 3일 이내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원증 교부 등)

- ① 입당 또는 복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당원서에 입당확정일자를 명기하고 시·도당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당원은 중앙당에서 발행한 당원증을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③ 당원증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당원번호, 교부일자 등을 기재하고 중앙당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④ 당원은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전적)

- ① 당원이 소속 시·도당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적원을 해당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전적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전적원을 접수하거나 통보받은 시·도당은 지체 없이 전적원과 관련서류 사본을 전적하고자 하는 해당 시·도당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전적을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 (탈당)

- ①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당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탈당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 ④ 당원자격이 소멸된 자의 관할 시·도당은 당원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원의 포상과 징계)

당원이 당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하여 포상 또는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규 제3호(중앙조직규정) 제6장(포상과 징계)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당원·당우 명부 등의 비치)

-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당원·당우 명부 및 탈당원명부 작성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시·도당은 당원·당우 명부와 탈당원·탈당우 명부를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전국 각 시·도당 당원·당우 명부와 탈당원·탈당우 명부는 중앙당 사무처에서 작성·관리한다.

제18조 (당원·당우 명부 열람·사본교부)

- ① 당원·당우 명부는 본인이나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원관리 담당자 이외에는 열람 및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없다. 다만, 당무와 공직선거, 당직선거 등을 위한 당원명부 열람 및 사본교부는 예외로 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당우명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지역위원회에 당원·당우 명부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당원·당우 명부사본을 교부받은 지역위원회와 당원은 사용 후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당무를 위한 당원명부 열람·사본교부)

- ① 당무를 위하여 당원명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당원명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보 및 의정보고서 발송 : 당원번호, 성명, 우편번호, 주소
 2. 문자메시지 : 당원명, 휴대전화번호
 3. 전자우편 발송 : 당원명, 이메일주소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원명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20조 (공직 선거 등을 위한 당원명부 열람·사본교부)

공직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당원명부를 열람,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후보자선출 경선을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2. 공직선거 선거운동기간
3. 당직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제21조 (당원명부 열람·사본교부 신청)

- ① 당원명부를 열람·사본교부 받고자 하는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중앙위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 당원관리 부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당원명부 열람·사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당원명부 열람·사본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당원관리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해당하는 당원명부 열람·사본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신청서 내용을 신속히 심사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당원·당우 명부 유출 금지)

- ① 당원·당우 명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열람 및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② 중앙당 또는 시·도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고 윤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1. 당원·당우 명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원·당우 명부를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
 3. 당과 관련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유출한 경우
 4. 당원·당우 명부를 사용한 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유출된 경우
 5. 당원·당우 명부를 사전선거운동 등에 사용한 경우

제23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 ① 입당, 복당, 탈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시·도당윤리위원장 및 사무처장과 상무위원회가 선출하는 상무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 ③ 시·도당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당우)

- ① 당우 명부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 ② 당우는 당이 실시하는 교육과 연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당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당우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당우탈퇴신고서를 접수한 중앙당이나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우 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 ④ 당우자격은 당우탈퇴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하며, 당우 자격이 소멸된 자의 해당 시·도당은 당우 자격 소멸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심사의 기준)

- ① 위원회는 당헌 제4조(자격 등)제1항 및 이 규정 제3조(당원의 구분)가 정한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을 심사한다.
 -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 2. 경선불복 또는 신의성실위반 등 해당행위
 - 3. 범죄행위의 전력
 - 4.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포상 또는 표창
 - 5. 기타 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기준

제26조 (이의신청)

- ①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당은 전항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 (비밀보장)

누구든지 입당, 복당, 탈당, 전적, 기타 당원·당우 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당대표는 창당 또는 합당 등으로 당원자격 심사 절차 없이 입당한 당원에 대하여 이 규정이 통과한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실시하여 범죄의 사실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입당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당 적 증 명 서

성 명	(한글)	주민번호	
	(한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직 장		
입당일자			

상기인이 창조한국당의 당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조한국당 시·도당위원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전 적 원

성 명	(한글)	(한자)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음력 월 일)	주민번호 -
현 주 소			
전 주 소			
현소속시·도당		당직	
전소속시·도당			
전 적 신청사유			
<p>위 본인은 상기 사유로 ()시·도당으로 전적하고자 전적원을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 또는 서명)</p> <p>창조한국당 시·도당위원장 (인)</p>			

<별지 제5호 서식>

탈당 신고서

성명	(한글)	주민번호	
	(한자)		
주소			
전화번호	자택		
	직장		
직업			

본인은 다음의 사유로 탈당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창조한국당

시·도당위원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탈당증명서

성 명	(한글)	주민번호	
	(한자)		
주 소			
탈당년월일			

위 사람이 창조한국당을 탈당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조한국당 시·도당위원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당원명부 열람 및 사본교부신청서

성 명		주민 번호	
주 소 (직 장)			
	소속		직위
전화번호	주택	직장	휴대폰
신청지역			
정보 열람 내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당원분류,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유			

상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당원명부를 열람하고자
사본을 교부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창조한국당

당대표 또는
시·도당위원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당우탈퇴신고서

성명	(한글)	주민번호	
	(한자)		
주소			
전화번호	주택		
	직장		
직업			

본인은 다음의 사유로 당우에서 탈퇴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

○ 사유: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창조한국당 시·도당위원장 (인)

❖ 당규 제 2 호

당인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에 관하여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인의 정의)

중앙당, 시·도당의 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창조한국당의 인
2. 시·도당 : 창조한국당의 OO시(도)당의 인, 창조한국당의 OO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인

제3조 (직인의 정의)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 창조한국당의 당대표의 인, 전국대의원대회회장의 인, 중앙위원회회장의 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창조한국당의 원내대표의 인, 사무총장의 인,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인, OO위원장의 인
2. 시·도당 : 창조한국당의 OO시(도)당의 위원장의 인, 창조한국당의 OO시(도)당창당준비위원장의 인

제4조 (당인과 직인의 사용)

당무와 관련하여 당과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교부, 인증하는 문서에는 이 당규가 정하는 당인과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당인과 직인의 보관)

- ① 중앙당의 당인과 직인 중 당대표의 인, 전국대의원대회회장의 인, 중앙위원회회장의 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인, 선거대책본부장의 인, 사무총장의 인은 총무국장이 보관하고, 그 외의 직인은 당해 기관의 선임 실·국이 보관한다.
- ② 시·도당의 당인과 직인은 각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보관하고,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과 직인은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이 보관한다.

- ③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이 보관하고 지역위원장의 직인은 지역위원장이 보관한다.

제6조 (규격 및 글씨)

- ① 당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이 한다.
- ② 당인과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 (교부 및 등록)

- ① 중앙당의 당인 및 직인은 총무국이 제작하여 보관 또는 교부한다.
- ② 시·도당과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당인 및 직인의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당인 및 직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중앙당 및 시·도당 당인과 각급 기관의 장의 직인 보관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하여 중앙당 총무국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날인의 위치)

- ① 중앙당 당인은 '창조한국당'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② 시·도당 당인은 '창조한국당의 OO시(도)당'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③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인증하는 자의 성명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9조 (재교부 및 폐기)

- ① 당인 및 직인을 분실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제작 또는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인 및 직인을 재제작, 재교부 또는 폐기할 경우 종전의 당인 및 직인대장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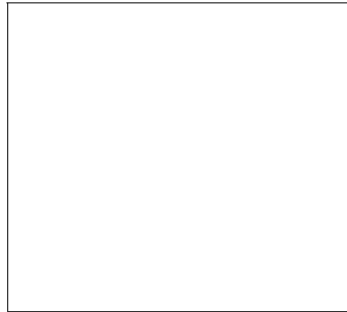
당인 및 직인의 규격

구 분	규 격
창조한국당 인	3.6cm
창조한국당대표 인	3.6cm
창조한국당원내대표 인	3.0cm
전국대의원대회의장 인	3.0cm
중앙위원회 의장 인	3.0cm
정책위원회위원장 인	3.0cm
선거대책위원장 인	3.0cm
선거대책본부장 인	3.0cm
창조한국당사무총장 인	2.7cm
위원회위원장 인	2.7cm
시·도당 인	2.7cm
시·도당위원장 인	2.4cm
시·도당대의원대회의장 인	2.7cm
지역위원회 인	2.4cm
기타(위 외) 인	2.4cm

<별지 제11호 서식>

당인대장

당인(직인)명 : _____



등 록	년 월 일	검인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람			
재 료			
적 요			

❖ 당규 제 3 호

중앙조직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당의 조직)

- ① 중앙당의 대의기관은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이다.
- ② 중앙당의 집행기관 및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당대표, 최고위원회, 원내대표, 정책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
 2.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각급 위원회
 3. 사무처, 대변인, 당대표비서실장 등

제2장 의결기관

제1절 전국대의원대회

제3조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절차)

-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대회 개최 10일 전까지 의제와 대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대회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총괄한다.
- ③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대의원 명부와 자격)

-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14일 전까지 대의원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당헌 제13조2항18호의 시·도당 전국대의원 정수는 전체 기간당원수로 하되, 대의원 명부와 자격은 개최 14일 전까지 참가의사를 밝힌 기간당원으로 한다. 단, 중앙위원회 의결로써 시·도당 전국대의원 자격과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대의원증의 교부)

- ①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또는 그 대리인은 확정된 대의원명부에 의하여 대의원에게 대의원증을 발급한다.
- ② 전항의 대의원증에는 대의원의 소속과 성명을 명시하고, 당대표의 직인을 날인한다.
- ③ 제1항의 대의원증은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에서 대회 개최일 전일까지 대의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 당일에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대리출석 등 금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7조 (회의록)

- ① 중앙당 사무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의장이 서명한다.

제8조 (위임사항의 제한)

전국대의원대회는 당헌에 규정한 권한 중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당의 해산에 관한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9조 (이의신청)

-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때에는 대회종료 후 14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당대표는 전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최고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당대표는 전항의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과 선출)

- ① 전국대의원대회의 강령 및 당헌 개정 등의 안건 의결은 대회 참가신청 대의원 명부 기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안은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전국대의원대회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은 당헌·당규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경선 규칙에 따른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11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수임 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시·도당 선출직 중앙위원은 시·도당대회 선출직 23인(서울 4인, 경기도 4인, 부산 2인 외 타 광역시도는 각 1인)으로 한다.
- ③ 시·도당 선출직 중앙위원이 잔여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궐위된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의결로 임명한다.
- ④ 지명직 최고위원과 중앙당의 각급 상설위원장은 인준 후부터 중앙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가진다. 중앙당의 각급 상설위원회위원장은 인준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중앙당의 각급 상설위원회위원장이 잔여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궐위된 경우에는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제12조 (의장단)

- ① 중앙위원회의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남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여성 1인 부의장은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이 맡는다.
- ② 중앙위원회 의장단의 임기는 당대표 등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이후 최초 개최하는 중앙위원회까지로 한다.
- ③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당해 회의에 한 해 임시 의장을 선임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④ 중앙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준)

- ① 중앙위원회 의장은 주요 당직자와 공직선거후보자의 경력 서류 등을 중앙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위원회 인준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중앙당 사무처는 인준을 받는 자에 대한

투표 명부를 사전에 준비한다. 단, 중앙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투표를 할 수 있다.

- ③ 최고위원회는 인준이 거부된 자의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임용 절차를 밟는다.

제14조 (운영)

- ① 중앙위원회 안건은 최고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상정한다. 단, 재적 중앙위원 10분의 1 이상의 중앙위원이 서명하여 제출된 의안은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위원회 상정 의안은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한다.
- ③ 중앙위원회 의장단은 모든 회의의 공개 및 비공개, 인터넷 중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위원회 의장은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는 외에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⑤ 중앙당 사무처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관한 자료를 중앙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위원회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 시작 전에 그 요지를 통보할 수 있다.
- ⑥ 중앙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 ⑦ 중앙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⑧ 중앙위원회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중앙위원회 회의 중에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 ⑩ 중앙위원회 의장은 회의 중에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주의, 경고, 발언 취소와 사과, 퇴장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의안의 처리)

- ① 중앙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상정된 의안은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헌 개정의 경우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중앙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최고위원, 정책위원회위원장 및 윤리위원회위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재적위원 2분의 1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당헌 제5조 1항 7호에 따라 기간당원 200명 이상의 소환 이유를 담은 서명에 의한 당직자 소환요청 시 중앙위원회는 해당 당직자를 소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해임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6조(중앙위원회 회의록)

- ①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의 녹취 또는 기록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이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다.
- ③ 사무총장은 제1항의 회의록의 요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을 시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사와 상벌,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소위원회 운영 등)

- ① 당헌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를 중앙위원회 산하에 구성한다.
- ② 중앙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중앙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3장 집행기관

제1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

제18조 (당대표의 권한)

- ① 당대표는 중앙당 집행기구와 위원회 및 원내 주요 당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당대표는 당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당대표 자문 기구를 구성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③ 당대표는 당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특보단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당대표는 당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최고위원회에 특별위원회 특별기구의 구성을 제안하고 책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⑤ 당대표는 비서실을 구성하고 특별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 (최고위원회의 운영)

-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최고위원회는 매 주 1회 정기 회의를 갖는다. 단,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③ 최고위원회의 상정 의안은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한다.
- ④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고 추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⑤ 최고위원회는 회의의 공개 및 비공개, 인터넷 중계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⑥ 중앙당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관한 자료를 최고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송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회의에 안전을 상정할 수 있다.
- ⑦ 최고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 ⑧ 최고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최고위원의 임명)

- ① 최고위원회는 당헌에 따라 당대표가 추천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지명을 심의·의결한다.
- ② 지명직 최고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인준 후에 의결권을 가지며, 임기는 선출직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에 준한다.
- ③ 최고위원회는 인준이 거부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인준 절차를 밟는다.
- ④ 선출직 최고위원이 잔여 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궐위된 경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동일한 절차로 임명 의결하고, 그 자격과 임기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준한다. 중앙위원회 인준 반대 시에는 최고위원 자격은 정지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임명 절차를 밟는다.

제21조 (당직자의 임명)

- ① 당대표의 중앙당 집행기구와 위원회 및 원내 주요 당직자 추천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임명 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최고위원회는 인준이 거부된 중앙당 집행기구와 위원회 및 원내 주요 당직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임용 절차를 밟는다.

제22조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구성)

- ① 최고위원회는 공직선거를 위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비례대표선정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확정위원회,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공직선거를 위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비례대표선정위원회,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최고위원회는 제2항의 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최고위원회에서 임명 의결된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 비례대표선정위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확정위원,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에 대한 중앙위원회 인준 반대 시에는 소관 업무는 정지되며, 인준거부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임용 절차를 밟는다.

제23조 (최고위원의 책무)

-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최고위원은 당의 자강을 위한 업무를 분담한다.

제24조(최고위원회 회의록)

- ①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녹취 또는 기록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회의록의 요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최고위원의 회람과 동의를 거쳐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을 시에는 속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인 경우는 6개월 이내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적인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5조(상임고문과 고문회의)

- ① 상임고문은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② 당의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에서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며, 최고위원회에 대리인을 출석시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상임고문과 고문은 중앙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 당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당대표비서실)

- ① 당대표비서실은 당대표의 비서업무 기타 당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당대표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며,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비서를 지휘·감독한다.

제27조 (대변인)

- ①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관리·행정지원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약간 명의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둔다.
-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당의 각종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 ④ 대변인실의 행정업무지원은 사무처의 공보실이 담당한다.

제28조 (자문기구)

- ① 당대표는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의 이름은 자유로우나 반드시 ‘자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당대표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 ④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 (확대간부회의)

- ① 당대표는 당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례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확대간부회의에는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와 부대표, 정책위원회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과 부총장, 대변인, 당대표비서실장,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당대표는 회의에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확대간부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제30조 (시·도당위원장회의)

- ① 당대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시도당위원장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위원장회의를 당대표는 즉시 소집해야 한다.
- ③ 최고위원회는 당무와 관련하여 시·도당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도당위원장회의의 업무는 조직국이 담당한다.

제2절 당무 집행기구 등

제31조 (중앙당 사무처의 구성과 업무)

- ① 중앙당 사무처에 당의 총무, 재정, 조직, 정무, 홍보 등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둔다.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임명한다.
- ② 중앙당 사무처는 각종 실·국체계로 운영할 수 있다. 실·국에 실·국장을 두고, 실·국장은 해당 실·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실·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무직 당직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중앙당 사무처는 효과적인 당무 수행을 위해 각급 상설·비상설 특별위원회의의 업무를 지원한다.
- ⑤ 사무처는 이 당규에 규정한 업무를 관장하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32조(중앙당 사무총장 등)

-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사무직 당직자의 복무관리 및 당무집행을 통할한다.
- ② 사무총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임명, 중앙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 ③ 사무총장은 분기별 수입예산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11월 30일까지 편성하여 재정위원회 보고 및 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⑥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 및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사무총장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제안 및 협의, 당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체를 둘 수 있다.

제33조 (사무직 당직자의 구분 등)

- ① 중앙당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 ② 신규 채용한 사무직 당직자는 수습 당직자로서 일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 ③ 사무총장은 당무집행의 필요에 따라 전보, 겸임 또는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④ 사무총장은 당무집행의 필요에 따라 계약직 당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⑤ 사무직 당직자의 직급, 임면, 보임, 승급,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 (총무국)

- ① 총무국은 당직자의 인사, 회의지원업무 및 자료관리, 당무운영과 관련한 조달 및 관리업무, 다른 실·국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총무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총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당무운영과 관련한 시달업무, 의전 및 섭외업무, 당 주요행사의 집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업무지원, 인사 관련 회의지원, 당의 각종 인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쇄·제작물 등 물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가격조정, 물품의 구매·조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발송·관리, 당직근무 및 보안, 당인 및 직인 등 인장에 관한 사항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6. 당내시설의 관리, 전기·전화·통신의 설치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7. 당원의 입당·탈당·복당의 관리 및 당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8. 당원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중앙당 윤리위원회, 상설·비상설위원회, 당대표 자문기구와 특보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실·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 (재정국)

① 재정국은 당의 경리 회계, 재산관리, 당비납부 관리, 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재정국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의 회계, 당비납부 관리, 및 중장기 재정대책의 수립, 금전출납과 결산,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2. 건물, 자동차, 당내의 시설물, 기타 재산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 관련 업무
4. 예산결산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당의 재정대책 수립 등 재정위원회 소관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용의 평가 및 분석, 예산결산

④ 사무총장은 재정국으로 하여금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 ⑤ 금전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⑥ 단위당 지출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혀야 한다.
- ⑦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직국)

- ① 조직국은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당의 조직 확대, 당 행사와 교육·연수, 선거업무의 집행,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과 지방자치당정협약에 관한 기획업무, 교육연수위원회 지원, 조직관련 특별위원회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조직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조직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의 조직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조직 확대를 위한 기획에 관한 사항
 - 2. 시·도당위원장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당원의 교육·연수 및 교육연수위원회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4. 공직후보자추천을 위한 지원 업무 및 선거정보의 수집·분석
 - 5. 각종 선거 업무의 집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 6. 시·도당의 공조직 및 지역위원회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7.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9.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10. 비상설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 (기획조정국)

- ① 기획조정국은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중앙당의 당무에 대한 기획과 업무조정 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기획조정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기획조정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 확대간부회의 및 기타 주요 회의의 소집과 연 락,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
 - 2. 당의 중장기 사업기획, 각종 행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 3.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 관련 실무 사항
 - 4. 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 5. 실·국별 업무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정국현안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관단에 관한 사항
9.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38조 (정세분석국)

- ① 정세분석국은 여론조사, 현안 분석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정세분석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정세분석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론조사의 계획, 실시, 결과분석, 자료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2. 공직후보자추천 및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3. 현안에 대한 여론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39조 (홍보미디어국)

- ① 홍보미디어국은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당 활동의 홍보에 관한 업무와 당 홍보물 제작, 방송토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미디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홍보미디어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홍보미디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장단기 홍보 전략의 수립, 홍보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홍보기획위원회의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
 3. 당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제작, 배송, 보관 등에 관한 사항
 4. 영상홍보물의 기획과 제작에 관한 사항
 5. 당의 광고에 관한 사항
 6. 당의 사진자료 촬영 및 정리·운영에 관한 사항
 7. 방송토론의 지원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8. 방송광고의 계획수립 및 제작에 관한 사항
 9. 방송연설의 대책 및 준비
 10.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40조 (전자정당국)

- ① 전자정당국은 전자정당 추진 및 온라인 홍보, 전자정당위원회 업무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전자정당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전자정당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정당추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사항
2. 당의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과 개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방송 및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4. 당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온라인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당시스템 기술지원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당위원회의 회의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 (대외협력국)

- ① 대외협력국은 시민사회·직능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노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 ② 대외협력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대외협력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능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사항
 3. 국제협력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 환동해발전위원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년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체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42조 (여성국)

- ① 여성국은 여성조직의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 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 ② 여성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여성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여성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당 여성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의 여성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3조 (청년국)

- ① 청년국은 청년조직의 확대와 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 ② 청년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청년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년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2.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청년조직 확대 등의 기획에 관한 사항
 - 3. 당 관련 청년조직의 확대와 관리에 관한 사항
 - 4. 당의 청년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5. 청년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제44조 (교육연수국)

- ① 교육연수국은 당원 및 청년, 여성 기타 시민들의 올바른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연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 ② 교육연수국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교육연수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당, 시·도당이 실시한 당원의 연수 또는 행사,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2. 교육연수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3. 당 정책연구소, 연수원, 사회교육원에 대한 업무 협조와 지원

제45조 (민원실)

- ① 민원실은 민원과 당의 법률적 문제, 법률인권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민원실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민원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민원의 접수,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민원의 분류와 관련 기관에의 송부·처리 업무
 - 3. 민원의 조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정책적 대응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 4.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대응에 관한 사항
 - 5. 법률과 관계된 민원의 접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6. 법률인권위원회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 (공보실)

- ① 공보실은 대변인의 업무지원, 당의 언론 홍보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 공보실의 사무직 당직자 직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공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의 각급 기구의 언론홍보강화를 위한 업무지원 사항

2. 논평 및 보도 자료에 대한 정리 및 배포 사항
3. 각종 언론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언론분석 자료 생산 사항
4. 대변인 활동에 관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제47조 (정책실)

- ① 정책실은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기획하고, 당정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② 정책실에는 정책실장을 두며, 정책실장은 소속실원 및 정책조정위원회 정책연구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정책실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정협의에 관한 사항
 2. 당의 입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정책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당의 정책 및 입법과 관련한 민원에 관한 사항

제4장 각종 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48조 (의원총회의 소집)

- ① 의원총회는 당헌 제58조(의원총회)에 열거한 권한에 관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 ②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당 소속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 (법안심사위원회)

- ① 법안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법률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협의하여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③ 법안심사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해당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법률안의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원내대책회의)

- ① 원내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국회대책

2.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의 조정
 3. 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의정홍보 기타 국회활동에 관한 사항
- ② 원내대책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제2절 원내대표 등

제51조 (원내대표의 선출)

-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1, 2위 투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의 결과 2인의 후보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을 선포한다. 단, 원내대표선거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의원총회의 결의로 선출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 수가 3인 이하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의 추천과 최고위원의 의결로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 ④ 원내대표가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불신임으로 해임될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2조 (원내대표의 신임투표)

- ① 원내대표 신임투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내대표는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원내대표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신임투표를 요구한 의원들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 ③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 ④ 원내대표가 해임되면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 (원내대표비서실)

- ① 원내대표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와 기타 원내대표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원내대표비서실장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비서를 지휘·감독한다.

③ 원내대표비서실에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당직자를 둘 수 있다.

제54조 (원내기획실)

- ① 원내기획실은 원내대책과 입법 및 정책 활동을 기획하고 의정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② 원내기획실에 원내기획실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원내전략 및 자료수집 등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당의 입법 및 정책수립 등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원내대책자료, 의정홍보물의 제작 등 정무기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5조 (원내행정실)

- ① 원내행정실은 당의 원내활동을 위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 ② 원내행정실에 원내행정실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의안의 제출·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교섭단체 관련 행정업무, 각종회의 준비, 연락, 의원친선협회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비품관리 등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3. 원내의 온라인 활동에 관한 사항

제56조 (국회정책연구위원 등)

국회법령에 의한 국회직 당직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국회에 추천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57조 (운영)

- ①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 ②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부위원장 중 1인은 시도당위원장 회의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제58조 (정책위원회 전체회의)

- ① 정책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의 기본정책의 결정과 관련하여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거나 정책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책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에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59조 (정책조정위원회)

- ①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②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과 정부 간의 당정협의, 정책조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와 소속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의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 ③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그 수는 4개를 넘지 못한다.

제60조 (정책조정회의)

- ①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분과위원회 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한다.
- ② 정책조정회의는 정책위원회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해당 분과위원장과 약간 명의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소관분야 분과위원회는 따라야 한다.

제61조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① 분과위원회는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로 한다.
- ② 상임분과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은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준한다.
- 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당무의 특정사안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제62조 (분과위원장 등)

- ① 분과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 ②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정책위원은 누구든지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특별분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3조 (분과위원회 연석회의)

- 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연석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 ②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요구한 때에는 정책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4조 (예산결산심사위원회)

- ①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당 정책의 조사·연구·입안을 위하여 상설분과위원회로서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분과위원회별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예산결산심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 소속 위원장 또는 간사가 되고, 위원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65조 (정책연구원)

- ①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 등 정책연구원을 둔다.
- ②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의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정책사항을 지원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입안을 담당한다.
- ③ 수석전문위원은 정책조정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분야의 정책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정책연구원은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 (정책자문기구)

- ①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정책자문위원과 정책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정책자문위원과 정책평가위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7조 (특수정책기획단)

- ① 정책위원회에 특정한 정책적 현안이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다.
- ② 특수정책기획단의 설치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발의한다.
- ③ 특수정책기획단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정책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④ 특수정책기획단장은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활동상황, 실태조사, 처리방안 등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 (공청회 등)

- ① 정책위원회위원장은 당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경우,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 또는 중앙위원회의 요구 있을 경우에 공청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기타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전향의 공청회 등의 모임에는 당 외의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69조 (정책의 확정)

- ① 당의 정책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해당 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 ② 확정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0조 (법률안의 확정)

- ① 당의 법률안은 당규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과위원회와 법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원총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 ② 원내대표는 확정된 법률안을 즉시 국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 (지방자치정책협의회)

- ①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정책협의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당대표 직속으로, 각 시·도당에는 시·도당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중앙당지방자치정책협의회 의장은 각급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③ 지방자치정책협의회는 당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2조 (지방자치시민대학)

- ① 시·도당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의식개혁 및 당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시·도당 지방자치 시민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
- ② 중앙당 및 정책연구소는 시·도당지방자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민대학 고위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시민대학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 ④ 지방자치시민대학의 모집요강, 이수과목, 강사진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제1절 윤리위원회

제73조 (중앙당 윤리위원회와 위원장)

- ① 당의 강령과 정책, 당헌과 당규에 기초하여 당의 기강유지 및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추천과 중앙위원회의 인준으로 대표가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급 윤리위원회 회무를 지휘·총괄한다.
- ④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위원회 소집)

-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상무위원회, 중앙당 윤리위원장, 중앙당 사무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중앙당 윤리위원회와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당원의 제명과 당원자격정지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 (당원의 자격심사)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사고당부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76조 (직무의 독립성)

윤리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77조 (조사명령과 이행)

- ①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당원의 청렴성과 업무능력 신의성실의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당강령과 정책 당헌·당규 준수 의무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해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②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지시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조사·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③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소집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당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대표와 중앙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업무)

-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시·도당이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경과를 지체 없이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요구와 청문회 등)

- ① 윤리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 당원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진술·기타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제80조 (윤리위원의 징계)

윤리위원이 징계의 대상이 된 때에는 해당 윤리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의 및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절 포상과 징계

제81조 (포상)

당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당원 또는 당외 인사 및 유관기관과 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2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와 포상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포상 : 당대표의 포상
2. 2급 포상 : 중앙당 각 기관의 장, 시·도당위원장의 포상

제83조 (포상의 기준)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포상의 대상을 선정한다.

1. 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2.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한 공로
3. 기타 특별히 인정되는 공로

제84조 (징계)

① 당헌·당규 또는 당론과 당명을 위반하거나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당직의 자격정지 또는 직위해제
4. 경고

제85조 (징계의 사유)

①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때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한 때
3.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원을 분열 모해한 때
4.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한 때

5.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한 때

6. 당의 품위를 훼손한 때

- ② 윤리위원회가 정황과 문서 등으로 전항 각호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1차 경고를 주고, 경고를 무시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는 행위를 한 당원 또는 당직자에게 즉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86조 (자격정지)

- ① 당원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당원은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최고위원회의 자격회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가 정지된다.
- ② 당직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은 당원은 정지기간이 종료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자격회복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당직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당직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당원은 윤리위원회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되며, 처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당직을 박탈한다.

제87조 (상벌의 절차)

- ① 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상벌안은 각급 윤리위원회가 심사 의결하고, 윤리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의 경우는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사무처에 보고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상벌안을 중앙위원회에, 시·도당위원장은 중앙당사무처와 협의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상벌안이 확정된다.
- ③ 중앙위원 또는 각급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안은 각급 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중앙위원회에 제소하고, 중앙위원회가 의결함으로써 확정된다. 이때에 해당 중앙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해명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안건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시·도당이 중앙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때에는 이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동 징계안을 처리한다.
- 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 이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88조 (소명의 기회)

각급 윤리위원회가 징계안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안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9조 (재심절차)

- ① 중앙당에서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따라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징계사유를 반복할 만한 새로운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시·도당에서 징계결정을 받은 당원이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와 해당 시·도당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 (비상징계)

- ① 당대표는 선거 기타 비상시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고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정지 이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피징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장 예산과 회계

제91조 (예산결산위원회)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에는 외부의 회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찬성투표제로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 중에서 다수의 순으로 선출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사무총장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사무총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의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년 1회 중앙당에 대하여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며, 중앙당 각 집행부서는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⑥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중앙당 각 집행부서와, 위원회, 정책연구소, 각급 지역 조직 등 당의 모든 조직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특별감사하여, 특별감사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며, 피감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⑦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⑧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기부금과 당비내역의 공개 여부는 최고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2조 (시·도당 국고보조금 등의 결산)

- ① 시·도당위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앙당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시·도당의 결산보고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때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당대표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당무감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93조 (회계감사)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의 전문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회계감사의 실시 시기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를 당대표에게 즉시 보고하고, 회계감사결과의 공표 범위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중앙위원회가 공표범위의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 ④ 회계감사분과위원회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94조 (여성정치발전기금 조성 등)

- ① 여성정치발전기금은 국고보조금, 당비지원금, 모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여성정책개발, 여성지도자 발굴·육성 및 여성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사용한다.
- ② 여성발전기금은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③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결산내역은 당 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95조 (회의운영 등)

① 각종 위원회의 의안 및 회의운영, 의안상정, 의안심의 및 처리, 회의록 작성 등은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모든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6조 (중앙위원의 임기)

중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용)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력과 우선 순위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당무를 운영한다.

❖ 당규 제 4 호

사무직당직자인사 및 복무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에 의거하여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직 당직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당법 제30조에 따른 유급사무원 정수에 해당하는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또는 정책연구원
2. 국회정책연구위원 및 행정보조요원(9급 상당)에 해당하는 국회직 사무처 당직자
3. 당헌 제16조(정책위원회 등)제2항에 의해 설립된 정책연구소의 연구직원과 관리직원을 포함한 사무직 당직자

제3조 (사무직 당직자의 직제)

- ① 사무직 당직자의 직제는 내규로 정한다.
- ② 사무직 당직자를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눈다.
- ③ 사무총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각 직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부여하는 계약직 당직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직책’이라 함은 1인의 사무직 당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②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③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직책 변경을 말한다.
- ④ ‘승진’이라 함은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강임’이라 함은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⑥ ‘승급’이라 함은 같은 직급 내에서 보수를 조정할 때 상위의 호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사무직 당직자의 임면, 퇴직, 승직, 전보, 전출 및 근무형태 전환에 관한 사항
3. 사무직 당직자의 포상, 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사무처 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 선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선임위원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당헌·당규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는 독립하여 의사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하여 관련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임용의 원칙)

① 사무직 당직자의 임용은 채용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사무직 당직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조 (신규채용)

① 사무직 당직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은 신입직과 경력직으로 구분한다.

③ 신규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결원 등 시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10월 이외의 시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9조 (신규채용절차)

① 신규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는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인사발령)

- ① 사무직 당직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만 직책을 보유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② 인사발령은 시행일 기준 3일 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겸임)

-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무총장은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② 겸임은 사무총장이 해당 실·국 책임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2조 (파견근무)

- ① 당무집행 상 필요한 경우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파견근무는 사무총장이 실·국 책임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전보)

- ① 사무직 당직자의 전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무집행 상 필요한 경우 정 규인사를 제외한 사무직 당직자의 전보를 사무총장이 명할 수 있다.
- ② 전향의 심의는 해당 사무직 당직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전보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승진)

- ① 사무직 당직자의 각 직급 간 승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승진은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③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최저 근무 연수는 내규로 정한다.

제15조 (인사고과)

- ①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장은 사무직 당직자의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인사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고과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다면인사고과평정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 ③ 사무총장과 해당 위원장은 소속 실·국에서 2월 이상 근무한 실·국의 장에 대해서 격월 1회로 근무평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해당 팀, 실·국의 장은 소속 실·국원에 대해서 전향의 기준으로 근무평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운영지원실은 사무직 당직자에 대해서 매년 1월과 7월에 다면인사고과평점을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행시기를 전후 1개월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⑥ 당대표는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직 당직자에 대해서 승진, 감봉, 정직, 감임, 해임을 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전향의 평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정기인사)

- ① 사무직 당직자의 정기인사는 당대표가 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② 정기인사는 전보, 승진을 포함하며 매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후 1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인사)

- ①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의 파견근무, 겸직 및 계약직 당직자의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특별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파견, 겸직, 계약직 당직자의 채용은 사무총장이 해당 실·국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대표는 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및 보임을 실시할 수 있다.
 1. 당 발전에 공이 많은 자
 2. 대외적으로 당의 명예를 높인 자
 3. 인사고과 결과 근무성적, 다면인사고과평점 등이 현저히 우수한 자
 4. 당헌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제18조 (순환 보직)

사무직 당직자는 정기인사 때 그 수의 30% 이상을 순환하여 전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임기의 제한)

- ①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그 임기를 같이 하는 3인 이내의 당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 ② 전향에 따른 당직자의 근무기간은 당대표 및 원내대표의 임기종료 시점까지로 한다.
- ③ 사무직 당직자가 선출직 당직에 출마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한다.

제20조 (보수)

- ① 사무직 당직자의 보수에 관하여 다음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및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 ② 계약직 당직자의 보수는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 ① 사무직 당직자의 보수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재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직 당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2. 사무직 당직자의 보수수준의 결정 및 조정
 3. 기타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 ④ 위원장은 매년 11월 중 정기적으로 또는 당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 ⑤ 당대표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재정국이 담당한다.

제22조 (교육, 훈련)

- ① 모든 사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가 될 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가 담당업무와 관련한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23조 (포상)

- ①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포상은 당규 중앙조직규정 제6장 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전항에 의거하여 사무직 당직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제14조(승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특별인사)제3항에 규정한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 ①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징계는 당규 중앙조직규정 제6장 윤리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 ②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과오 사실이 중한 자와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개선의 정이 없는 자에게 행하며 경징계는 과오 사실이 경한 자에게 행한다.
- ③ 중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사무직 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며, 파면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보수만을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2. 해임 : 사무직 당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보수만을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3. 강임 : 사무직 당직자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제3조(사무직 당직자의 직제)제1항의 직급을 1단계 이상 강급한다.
 4. 정직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5. 감봉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총보수액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다.

6. 대기발령 :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직책에 의해 주어진 직무와 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④ 경징계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근신과 견책으로 한다.

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무직 당직자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한다.

1. 정직 및 감봉 : 1년

2. 견책 : 6개월

3. 대기발령 : 그 기간 동안

제2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모든 사무직 당직자는 당의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당의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 (업무지시 이행 의무 등)

① 사무직 당직자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 당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사의 분별 등)

사무직 당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하고 공정·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품위유지의 의무)

사무직 당직자는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업무의 인계)

① 사무직 당직자가 승진, 전보, 파견근무 등의 명령을 받아 근무형태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 당직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 실·국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 (근무시간)

① 사무직 당직자의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에는 5시까지)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 (휴가의 종류)

사무직 당직자의 휴가는 공가휴가, 경조휴가, 가족간호휴가, 산전·산후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2조(산전·산후휴가)

- ①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인 여성이 임신 중일 경우에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3개월의 산전·산후휴가를 주며, 산후 5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 ② 사무총장은 임신 중인 여성 당직자가 유산 등의 방법으로 휴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3조 (휴직 등)

- ① 사무직 당직자는 부상·질병 중인 가족의 간호와 육아휴직 등을 위하여 질병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연간 1회 30일간 휴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총장은 당무 운영에 장애가 없는 경우 허가 할 수 있다.
- ③ 사무직 당직자는 자신의 교육과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사무총장은 그 기한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병가)

- ① 사무총장은 질병, 부상,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년 2개월 이내에 병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공가)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 1. 병역법에 의한 소집, 검열점호,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때
- 2.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된 때
- 3. 법률 규정에 의한 투표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한 때
-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36조 (경조휴가)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가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내규의 기준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준다.

제37조 (포상휴가)

사무총장은 특별한 공로 등에 의한 보상으로 사무직 당직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8조 (휴가신청과 출근명령)

- ① 사무직 당직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고, 휴가 종료 후 즉시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가, 병가, 경조휴가, 산전·산후휴가의 경우와 사무총장이 요구할 시에는 의사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실·국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이라도 사무직 당직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결근처리)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시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 경고
2.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 감봉
3. 2회 경고 또는 감봉을 받았을 때 : 정직, 대기발령
4.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3회 경고 또는 감봉을 받았을 때 : 강임, 해임

제40조 (당직)

- ① 사무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각종의 사고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 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제41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사무직 당직자는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당헌·당규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42조 (당연 퇴직)

사무직 당직자가 신규채용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 퇴직 한다.

제43조 (명예퇴직)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사무총장은 사무직 당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년)

사무직 당직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제19조(임기의 제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 ① 누구든지 승진,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 기재, 증명,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는 사무총장의 승인 없이 일체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2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토록 한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제 5 호

당비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라 당비의 금액,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비의 구분)

당헌 제7조(당비)의 규정에 따라 당비 납부 종류를 일반당비, 직책당비,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제3조 (당비)

- ① 당비는 당원의 약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 ② 당원은 본인의 처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당비의 경우 강제적 의무의 성격은 아니며, 당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당원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③ 당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조 (직책당비)

- ① 직책당비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당헌·당규 또는 해당당부의 의결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 ②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직책당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직책이 둘 이상 중복되는 당직자의 경우에는 그중 다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당비)

- ①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등 당내행사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 ③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제6조 (당비의 납부)

- ①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당비는 은행자동이체, 휴대전화결제, 신용카드결제, 유선전화결제, 현금결제, 무통장입금 등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당비를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당비납부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해당 시·도당이 당비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에 당원은 해당 시·도당을 부기하여 중앙당의 당비납부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 ④ 당비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하고, 회계책임자는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당비납부의 편의를 위해 당비관련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당비관련 담당자는 수금한 당비를 지체 없이 시·도당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당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시·도당은 현금납부당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시·도당은 전체 당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없다
- ⑦ 지역위원회 일반당비의 현금 납부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한다.

제7조 (당비의 배분)

- ①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의 10분의 5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 ② 중앙당은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10분의 1을 시·도당에 배분한다.
- ③ 중앙당은 은행자동이체, 휴대전화결제, 신용카드결제, 유선전화결제 등으로 납부된 일반당비의 입금이 완료되면 당원이 소속된 시·도당에 전액 배분한다.
- ④ 시·도당은 중앙당으로부터 배분받은 당비와 국고보조금 30% 이상을 지역위원회 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직책당비의 납부)

- ① 중앙당 당직자와 국회의원, 중앙위원, 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 ②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
- ③ 시·도당위원장, 시·도별 선출직 상임중앙위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하고, 중앙당은 입금 확인 즉시 해당 시·도당에 송부한다.

제9조 (영수증 교부)

- ① 당원이 당비를 납부한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매월 1회 당비입금실적을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당비대납 금지)

- 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납부하게 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핸드폰결제, 유선전화결제, 신용카드결제, 은행자동이체로 당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입당자와 실가입자의 명의를 다를 수 있다. 다만, 실가입자는 입당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하며, 입당자는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납부하게 한 당원을 알게 된 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 또는 해당 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당비 대납 사실의 조사, 심사 및 징계 절차는 당규 제3호(중앙조직규정) 제6장(포상과 징계)의 규정을 따른다.
- ⑤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납부하게 한 당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당원의 자격정지, 제명일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당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 ⑥ 최고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비 대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포상금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감사)

중앙당은 시·도당이 제6조(당비의 납부) 및 제10조(당비대납 금지)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7조(당비의 배분)제1항의 규정은 2007년 12월 19일까지 적용을 배제하고, 시·도당에 납부한 당비는 시·도당에 전액 납부한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표 제1호>

직책당비 기준금액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구분	직 책	월 기준 금액
당 직 자	당대표	200만원(원외 100만원)
	원내대표	200만원
	상임고문, 고문	100만원(원외인 경우 20만원)
	최고위원	100만원(원외인 경우 20만원)
	중앙위원회회장	100만원(원외 20만원)
	전국대의원대회회장	100만원(원외인 경우 20만원)
	전국대의원대회부회장, 중앙위원회부회장	50만원(원외인 경우 10만원)
	사무총장	20만원
	정책위원회위원장	100만원(원외 50만원)
	정책위원회부회장, 정조위원장, 원내부대표, 사무처장, 대변인	70만원(원외 20만원)
	중앙위원	20만원(원외 10만원)
	부대변인	20만원(원외 5만원)
	당헌상 설치하는 위원회위원장, 각급 회의에서 의결로 설치하는 위원회위원장	20만원(원외 10만원)
	비서실장	20만원(원외 5만원)
	시·도당위원장	100만원(원외인 경우 10만원)
	시·도당 각급 위원장급, 지역위원장	10만원
	중앙당 부위원장급과 위원급/ 국정전문위원, 시·도당 상무위원	5만원
	정책연구위원 1,2급, 수석전문위원,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5만원
	중앙당 부국장급부국장, 전문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연구위원3급, 시·도당 정책실장과 공보실장	3만원
	중앙당 부장급(부장,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연구위원 4급(심의위원))	3만원
중앙당 차장급	1만원	
중앙당 간사	5천원	
공 직 자	대통령	200만원
	국무총리	100만원
	국회부의장	100만원
	국회상임위원장, 장관,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만원
	국회의원	150만원
	국회 집행위원장, 도서관장	50만원
	광역단체장	50만원
	기초단체장, 국회정무직(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30만원
	시·도의회 의장	30만원
	시·도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장	20만원
	기초의회 의원	10만원
	국회직, 정무직 1급 공직자(국회의장실, 집행위원장실, 장관실 등)	10만원
	국회직, 정무직 2급 공직자(국회의장실, 집행위원장실, 장관실 등)	10만원
	국회직, 정무직 3급 공직자(국회의장실, 집행위원장실 등)	5만원
	국회직, 정무직 4급, 국회의원회관 보좌관(4급)	5만원
	국회의원회관 비서관(5급)	5만원
	국회의원회관 비서(6급이하), 국회직 행정보조요원(9급)	2만원

❖ 당규 제 6 호

지방조직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장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당(이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도당의 지위와 설치)

- ①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 및 도내의 지역위원회를 총괄한다.
- ② 시·도당은 해당 광역시, 도내에 지역위원회가 있는 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 시·도당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당에는 시·도당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당 창당은 중앙위원회의 승인과 더불어 시·도당으로서 기능한다. 승인된 시·도당의 개편대회 결과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중앙당 사무처에 결과보고로 가름한다.

제3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설치)

-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본 지역조직으로서 모든 당원은 예외 없이 지역위원회에 소속해야 한다. 지역위원회를 건설하지 못하는 지역의 당원들은 광역시·도당이 직할한다. 단,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근 지역위원회가 직할 할 수 있다.
- ② 지역위원회는 기간당원이 30명 이상일 때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기간당원이 10명 이상일 때에 설치할 수 있다.
- ④ 단,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광역시·도당이 예외적으로 그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를 인준할 수 있다.

제4조 (지역위원회의 인준)

- ① 지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준)는 창립 즉시 해당 시·도당위원장에게 인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② 지역조직 인준신청서를 받은 시·도당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시·도당위원장은 인준여부 결정 후 즉시 중앙당에 보고한다.
- ④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중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장 광역시·도당

제1절 대의기관

제5조 (대의원대회)

- ①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임기 2년의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1.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 2. 당해 시·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 3.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 4. 중앙위원회 위원
 - 5. 각 지역위원회위원장
 - 6. 당 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 7. 시·도당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 8. 해당 광역 소속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 9. 시·도당 각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10. 각 시·도당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과, 일정기간 당무봉사 등 당에 기여한 바 있는 시·도당 기간당원 이상으로 대의원대회 참석 및 전자투표가 가능한 당원
-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2.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 중앙위원 선출
 - 3.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 4. 광역 당기위원회의 구성 및 회계감사 선출
 - 5. 기타 시·도당의 주요한 업무
-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및 의결 절차에 따라 개최한다.
 - 1.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3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해야 한다.
3.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2절 집행기관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둔다. 단, 지역사정상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비상임 공동위원장을 선출직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 대의원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인준할 수 있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시·도당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시·도당을 대표하며, 상무위원회 등의 주재
 2. 시·도당 당무 전반에 대한 조정·감독
 3. 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시·도당 주요 당직 임명
 4. 시·도당 예산·결산 집행 및 회계책임자 임명
- ⑤ 시·도당위원장 아래에 비서실과 공보실을 둘 수 있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상무위원회)

- ① 시·도당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시·도당상무위원회는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2. 중앙위원회 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5.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6. 시·도당 사무처장
 7. 지역위원회위원장
 8. 지방의회 의원

9. 시·도당 정책위원회와 각급 상설위원회위원장
 10. 시·도당 각급 특별위원회위원장과 특별기구의 장
- ④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시·도당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처리
 3.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4.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공직선거 후보자(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 제외) 추천에 관한 사항
 6. 시·도당 비상임위원장·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위원장의 임명 및 추천 동의
 7. 전자정당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도당 사무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결정
 9.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10.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 기타 시·도당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및 의결 절차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즉시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고, 부위원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의장·부의장 순으로 소집한다.
- ⑥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처)

- ① 시·도당의 당무를 집행하기 위해 상무위원회 아래 사무처를 설치한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해당 광역시·도당의 규약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사무처 산하에 총무국, 조직국, 정책국, 기획국, 선전·홍보국, 교육국, 연대사업국, 민원실 등을 둘 수 있으며, 국의 설치 및 폐지는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부문위원회)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특별위원회 및 본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회

제1절 대의기관

제11조 (대의원대회)

- 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당 소속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3. 기타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의원
- ③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위원회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지역위원회 해산 등 조직의 주요한 진로결정
 5.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한 사업 결정
- ④ 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지역위원회는 당원총회를 통해 제3항의 각호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단, 공동위원장을 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이 부의장이 된다.
- ⑥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소집 및 의결에 따라 개최한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개최일시, 장소, 대의원명단 등을 대회 개최 10일 전까지 중앙당 및 시·도당에 보고해야 한다.
- ⑦ 위원장은 대회 7일 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해야 한다.
- ⑧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중앙당 및 시·도당에 보고해야 한다.

제2절 집행기관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수인을 둔다.
- ②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수인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단, 공동위원장을 두는 지역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을 두어야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전체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1. 지역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 3. 지역위원회 집행부서의 국장 및 위원장을 추천하여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
 - 2. 사무국장
 - 3.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운영위원
- ②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 ③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원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 집행
 - 2. 다른 기관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3. 지역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
 - 4. 분회의 신설과 해소 및 분회장의 인준
 - 5. 사무국내 부서의 설치 및 폐지
 - 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7. 기타 지역위원회의 주요 업무

제14조 (소집 및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5조 (사무국)

- ①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총무, 조직, 홍보, 정책 등의 부서를 둔다. 사무국내 부의 설치와 해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③ 사무국장은 당해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라 선임하고,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시·도당의 설치와 지위)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설치 이전이라도 시·도당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개정사항)

이 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운용)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력과 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 조직을 구성하고, 당무를 운영한다.

❖ 당규 제 7 호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조(전국대의원대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 ① 제1조(목적)에 규정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중앙위원회 산하에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선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수를 늘릴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에는 여성이 5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을 여성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 ⑤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조(목적)에 규정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준비
2. 당헌 개정안의 정리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시안 작성
4. 당의 민주화·효율화 및 발전방향에 등에 관한 시안 작성

- 5. 중앙위원회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안건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집 및 의사)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위원회

- 가. 제1조(목적)에 규정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준비
- 나. 기타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직분과위원회

- 가.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관리 및 중앙위원회가 선임하는 대의원의 선정

3. 홍보분과위원회

- 가. 전국대의원대회의 홍보에 관한 준비

4. 당헌분과위원회

- 가. 당헌 개정안의 정리

5. 강령·정책분과위원회

- 가. 강령·기본정책의 개정을 위한 시안 작성

6. 당무발전분과위원회

- 가. 당의 효율적 발전방향 등에 관한 시안 작성

- ③ 중앙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타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 ①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약간 명을 두며, 이들은 위원회에서 임면하고, 준비위원이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설치 및 구성)제4항, 제4조(소집 및 의사), 제5조(회의결과의 공개), 제6조(회의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와의 관계)

- ① 위원장은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분과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지원)

-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에 인원의 파견, 기타 실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실무지원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세부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산)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당해 전국대의원대회 종료 후 해산한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제 8 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당헌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시 각 시·도에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중앙위원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
2.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당 추천후보자를 선출 또는 제청하는 선거

② 경선관리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3인 이하의 부위원장,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방식, 선거운동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결정 공고
2. 후보자등록, 공영선거운동 실시,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3.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투·개표부정 등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4. 당선자의 결정

제3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상실, 제명, 체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발한다.

- ② 당직 및 공직후보자추천 선거 종료 후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해 선거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에 선거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실시한다.
- ③ 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며,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발할 수 있다.
- ④ 선거부정의 사례와 제재 수단 선택의 기준은 내규로 미리 정한다.

제4조 (선거부정신고자에 대한 특례)

선거부정행위자가 내규에 금지·제한된 금품수수 기타 선거부정을 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하여는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공영선거운동 등)

- ① 위원회는 당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 합동연설회, 토론회,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공개면접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합리성과 공개성의 원칙 아래 후보자들의 비용부담이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를 설정하는 등으로 명량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기탁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에게 기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사항)

이 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제 9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공직선거법 제 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당헌 제26조(공직선거 후보자추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절 대통령후보자 선출

제2조 (대통령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 ① 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대통령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경선 후보자로 인정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선출하여 당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대통령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실시하여 경선 후보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예비경선의 실시 시기와 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조 (대통령선거 대책기구)

- ① 최고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후보자등록일 2월 전까지 대통령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

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절 공직후보자 선출

제5조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 ①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발굴·관리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자격심사위'라고 한다.)를 상설로 설치한다.
- ② 자격심사위는 각급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심사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한다.
 -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공동체가치관과 비전, 철학을 가진 자
 -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 3. 의정활동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4. 도덕성과 지도력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과 지도력을 갖춘 자
 - 5. 당선가능성 : 당선가능성이 높은 자
- ② 자격심사위는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③ 시·도지사,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자격심사위는 중앙당에 설치하고,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자격심사위는 시·도당에 설치한다.
- ④ 중앙당에 설치하는 자격심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선출하여 당대표가 임명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⑤ 시·도당에 설치하는 자격심사위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사무처와 협의하고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6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및 심사)

- 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는 제5조(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규정된 자격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하여 예비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 ② 공직선거 예비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희망지역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후보자의 추천 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여론조사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하여야 하며, 심사평점은 실명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 심사위원회)

- ①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시·도지사의 후보자 공천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간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단,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당 외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폭넓은 공천심사위원의 추천과 공정한 인선을 위해 시·도당 위원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당대표가 중앙위원회에 제안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⑥ 위원회는 경선후보자를 당성과 당기여도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서류심사, 여론조사, 개별면접, 집단인터뷰 등을 통한 평점에 의해 선발한다.

제8조 (시·도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 ①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원, 기초단체장 및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당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간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의 3분의1 이상은 당외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사무처와 협의하여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단,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사항은 시·도당위원장이 상무위원회에 제안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⑥ 위원회는 경선후보자를 당성과 당기여도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서류심사 개별면접 집단인터뷰 등을 통한 평점에 의해 선발한다. 평점표는 실명제로 하며 후보자나 중앙위원회의 요청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오류가 확인된 평점표는 위원회 의결로 제외한다.
- ⑦ 위원회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평점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제9조 (국민추천제도)

- ① 공직후보자 선출시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 위하여 국민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 ②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의 국민추천 접수창구는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추천 접수창구는 시·도당에 설치한다.

제10조 (상향식 경선제 실시)

- ① 모든 공직후보자추천을 위한 선거는 실명제 평점을 3분의 1 이상 반영하는 당원경선방식

으로 한다.

- ② 당원경선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경우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선거인단 방식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국민 참여 경선방식에 의한 선거인단의 구체적 구성방식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후보자가 합의하면 실명제 평점을 3분의 1 이상 반영하는 여론조사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 (투·개표 방식)

- ① 공직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명제 평점을 3분의 1 이상 반영하는 다수득표제로 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를 제외하고는 공직후보자 추천 선거에서 여성이 포함될 경우, 그 여성후보의 득표수에 10%를 가산한 득표수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12조 (경선불복에 대한 조치)

- ① 공직후보자 추천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여 당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는 탈당한 그 날로부터 3년간 복당을 할 수 없다.
- ② 공직후보자 추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일정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하고,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후보자의 공탁금을 몰수하는 선거공탁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선거공탁금액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13조 (전략공천지역 선정)

- ①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를,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는 전략공천지역(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이라고 한다.)을 해당 선거구 총수의 30%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전략공천은 경선지역 선정 이전에 선정하여 공고한다. 단, 중앙위원회 의결로서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중앙당과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 유력한 후보자가 없는 지역, 선거전략 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전략공천 할 수 있다. 이때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자치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후보선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직후보자 선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 ①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방식은 공모와 경선을 원칙으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경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확정한다.
- ③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공모를 원칙으로 후보자추천을 위한 선정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확정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순위확정위원회'라 한다.)가 그 순위를 확정하여 당대표가 추천한다.
- ② 선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선정위원회 위원을 중앙위원회에 추천하기 위한 소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추천소위원회'라고 한다.)를 중앙위원회 아래에 구성할 수 있다.
-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 위원, 추천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다.
- ⑥ 순위확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한다.
 1. 중앙위원
 2. 국회의원
 3. 시·도지사
 4. 지역위원회위원장
- ⑦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선정위원들의 실명제 평점표가 첨부되어야 하며, 당선가능권의 2배수 이하로 한다.
- ⑧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시 당선가능권의 30% 이하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략후보로 결정할 수 있다. 단, 구체적 순위배정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 ⑨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⑩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 여성을 50% 추천하며 홀수 순번에 배정한다.

제17조 (중앙당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 구성)

- ① 중앙당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이하 본조에서는 '중앙당 재심위'라고 한다.)는 중앙당에 설치하며,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하는 위원장과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단, 3분의1 이상은 당 외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공직후보자 추천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당 재심위가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경선결과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경선을 하도록 명하거나 중앙당 재심위가 직접 공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부정행위, 기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2.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결과 등에 비추어 경선으로 뽑힌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기타 미리 내규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는 ‘공천심사위’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자는 서면에 의한 요청으로 중앙당재심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후보자 중앙당 재심위는 서면조사, 관련자 면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④ 재심위는 전항의 심사결과를 공천심사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천심사위는 재의할 수 있다.
- ⑤ 중앙당재심위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 (시·도당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

- ① 시·도당공직후보자재심위원회(이하 본조에서는 ‘시·도당 재심위’라고 한다.)는 시·도당에 설치하며, 사무처가 추천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인준하는 위원장과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3분의1 이상은 당 외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공직후보자추천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당 재심위가 심사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선결과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경선을 하도록 명하거나 시·도당 재심위가 직접 공직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부정행위, 기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2.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결과 등에 비추어 경선으로 뽑힌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기타 미리 내규로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시·도당공천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자는 서면에 의한 요청으로 시·도당재심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 재심위는 서면조사, 관련자 면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④ 시·도당 재심위는 전항의 심사결과를 공천심사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시·도당재심위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 ① 시·도지사 후보자의 공모와 추천을 위한 경선방식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 후보자의 공모와 추천을 위한 경선의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추천)

- ①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공모와 추천을 위한 경선방식은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시·도당이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확정한다.
- ③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을 위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1조 (시·도의원 후보자 추천)

- ①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의 공모와 추천을 위한 경선방식은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시·도당이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확정한다.
- ③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선정하고 당대표가 추천한다.
- ④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는 남녀 동수로 선정하되 여성을 홀수 순번에 배정한다.
- ⑤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⑥ 시·도의원 경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2조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

- ① 자치구·시·군 의원(이하 본조에서 ‘기초의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기초의원의 경선 후보자 및 경선방식은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역위원회는 경선 결과에 따라 기초의원 후보자를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추천한다.
- ③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는 지역위원회의 추천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선정하고, 당대표가 추천한다. 지역위원회가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도당사무처가 추천하여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선정한다.
- ④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는 남녀 동수로 선정하되, 여성을 홀수 순번에 배정한다.
- ⑤ 시·도당이 기초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확정한다.
- ⑥ 기초의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선거와 관련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 (공직의 재추천)

공직선거로 확정된 자가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직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써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사항)

이 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제 10 호

선거대책위원회규정

[제 정 2007. 11. 23.]

[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당헌 제27조(선거대책위원회)에 의거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업무,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대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선거에 대응하여 필승을 거둘 수 있도록 중앙당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시 각 시·도에 지역별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통령 선거
2. 국회의원 선거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

②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중앙 선거대책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각각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와 시·도당 선거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선거대책본부 산하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를 둔다. 다만, 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별 선거연락소와 선거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④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써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임무를 부여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원회위원장
4. 비서실장,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홍보기획위원장, 전자정당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법률인권위원장

- ⑤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의 당직자 등의 파견을 요청하여 선거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⑥ 선거대책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실시,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사무
 2. 정책 개발, 홍보, 유세활동 등 득표를 향상시키는 활동
 3.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소 등 법률적 활동
 4. 기타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 관련 제반 업무

제3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 ①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는 후보 이외에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야별 본부장, 각 분야별 위원장 등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 본부장, 각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③ 대통령후보는 대통령선거와 조직, 인사 및 재정 등에 관하여 총괄한다.
- ④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통령후보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특보단, 비서실, 고문단 등을 둘 수 있다. 단, 대통령후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특보단과 비서실을 둘 수 있다.
- ⑤ 대통령후보는 후보직속으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 (자문기관)

- ① 대통령후보자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대통령후보자 자문기관은 대통령후보자의 자문에 응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등에 선거운동 전반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고문단)

-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전항의 상임고문과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제7조 (대통령후보자비서실)

- ①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은 비서업무, 기타 대통령후보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에 비서실장과 약간 명의 부실장 및 보좌역, 필요한 수의 사무직 당직자를 둔다.
- ③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은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④ 대통령후보자 비서실장은 대통령후보자의 명을 받아 대통령후보자 보좌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한다.
- ⑤ 비서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8조 (특보단)

- ① 대통령후보자는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특보단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 ② 특보단장과 특별보좌역은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③ 특보단장은 대통령후보자의 명을 받아 특별보좌역과 대통령후보자 자문기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대변인실)

-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 및 대 언론기관 업무를 위하여 대변인실을 둔다.
- ② 대변인실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 ③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④ 대변인실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을 둔다.

제10조 (중앙선거대책본부)

-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실무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본부를 둔다.
- ②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약간 명의 부분부장을 둔다. 필요할 경우 약간 명의 공동부분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③ 본부장과 부분부장은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④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선거지원기구를 둔다.

제11조 (기구의 구성)

- ① 중앙선거대책본부에는 선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중앙선거대책본부에 전략기획위원회, 법률지원단, 종합민원실, 종합상황실을 둔다.

제12조 (재정위원회)

- 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재정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및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고 대통령후보자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 ③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3조 (실·국의 구성)

- ① 각 실·국은 실·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 ② 실·국장은 각 실·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실·부국장은 실·국장을 보좌하고 실·국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중앙선거대책본부의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후보자가 임명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된 실·국에서 업무 지원을 한다.
- ⑤ 중앙선거대책본부는 그 의결로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당해 선거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구성, 임면,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국을 둘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지방선거대책기구)

- ①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당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시·도당위원장이 되고, 지역위원회선거대책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장이 된다. 단, 필요할 경우에 대통령후보자는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시·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달리 임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별도의 시·도당선거대책위원장의 권한 및 기능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파견근무 등)

- ①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중앙당 당직자를 각급 선거대책기구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각 분과위원장 및 실장의 의견을 들어, 총무위원장과 협의 거쳐

국장급 이하 당직자에게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중앙선거대책본부의 각급 기구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당직자 아닌 임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 (운영규칙)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사항)

이 당규는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당규 제 11 호

정책연구소규정

[제 정 2008. 12. 13.]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당헌 제71조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연구소는 시민정당·제5세대 참여정당인 창조한국당(이하 “당”이라 한다)의 기조에 맞추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창조한국당의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당 내외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정책연구소는 이름을 ‘사람희망정책연구소’라고 한다.

제3조 (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조한국당의 이념과 노선에 관한 연구
2. 중장기 국가비전 및 전략에 관한 연구
3. 공개·공유·창조·참여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 발굴
4. 정책노선에 입각한 학습형 인재양성 및 당원교육
5.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6. 국내외 정책교류 및 기술 협력
7. 정책자료 수집, 출판, 보급 및 정책관련 회의 개최
8. 정책 연구의 평가와 정책상 시상
9. 전문가·당원·시민 그룹과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10. 위 제1호 내지 제9호에 관련된 업무의 수탁과 위탁
11.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임원의 구성)

정책연구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이내

제5조 (임원의 임명 등)

- ① 연구소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는다.
- ② 주요 임원은 당대표와 연구소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의 자체 정관에 따른 의결절차로 선임한다.
- ③ 정책위원회위원장, 사무총장 및 연구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④ 감사
 1.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최고위원회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우리 당원이거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 ②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 등의 해임)

임원과 연구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연구소의 의결기구를 거친 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목적 및 명예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연구소장 등)

- ① 법인에는 1인의 연구소장을 두고, 수인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부소장은 당대표 또는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④ 연구소장 및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부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
5.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분기별로 1회 소집한다.
- ③ 연구소장이 의안심의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④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⑤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직원의 임면 등)

- ① 연구소의 직원은 당원에 한하며 그 임면은 소장이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정책위원회 소속 사무처당직자와 연구소 직원 간에는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인적교류 및 복수업무를 할 수 있다.
- ③ 연구소의 직원이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

이 법인의 대표자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경상비에 한하여 전년도의 예에 의하여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이 법인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 및 사업 실적표와 감사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개 의무)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엄수의무)

연구소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정관)

이 당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정관을 따른다.

부 칙 (2008. 12. 13.)

제1조 (효력발생시기)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정관의 제정과 개정)

연구소의 정관을 제정 혹은 개정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조한국당 당규 - 제1차 개정(2008.12.13. 제11차 중앙위원회)

※ 당규 개정 관련 조문

- 당헌 제18조(중앙위원회의 권한)1항4호 ‘당규의 제정 및 개정’



창조한국당

www.ckp.kr

(☎ 02)784-4701, Fax: 02)784-4705)



창조한국당

사람이 희망이다.

서호남주서지

창조한국당 개정당규

이 당규는 당헌 제18조(중앙위원회의 권한)1항4호 '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의거하여 제 11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절차를 통과하였으므로 2008년 12월 13일부로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합니다.